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511호
2. 발 의 자 : 이새날 의원
3. 발의일자 : 2023. 2. 6.
4. 회부일자 : 2023. 2. 9.

II. 제안이유

-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학생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교통사고의 범위를 학교 내는 물론 학교 밖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교통 안전대책 수립을 하기 위함.
-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1. 학생 교통사고 위험 관리 대상을 학교 밖으로 범위를 확대함(안 제1조)
2.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3. 학교교통안전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학교교통안전실태조사 실시와 결과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5. 교통안전지도와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6.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7.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8.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도로교통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유아교육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등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이새날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511호로 발의되어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통학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5년간 어린이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대비 매년 0.2%씩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부터 시행되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12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¹⁾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에 대한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서울 스쿨존 25곳, 4년간 2차례 넘게 어린이 교통사고', KBS,2022.12.20. 윤아림 기자 기사, '오후 3시 하교하던 9살, 스쿨존 횡단보도서 차에 치여 숨져', 한겨레, 2022.10.28., 최상원 기자 기사, '민식이 법에도 등푼길 사고 빈발...차도-보도 분리 지지부진 탓', 한겨레신문, 2023.2.1.,곽진산 기자 기사

[표-1]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추세2)

▶연도별 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전체교통사고			어린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12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건	점유율	명	점유율	명	점유율			
2017	216,335	4,185	322,829	10,960	5.1	54	1.3	13,433	4.2	479	8	487
2018	217,148	3,781	323,037	10,009	4.6	34	0.9	12,543	3.9	435	3	473
2019	229,600	3,349	341,712	11,054	4.8	28	0.8	14,115	4.1	567	6	589
2020	209,654	3,081	306,194	8,400	4.0	24	0.8	10,500	3.4	483	3	507
2021	203,130	2,916	291,608	8,839	4.4	23	0.8	10,978	3.8	523	2	563

▶사고시상태별

(기준: 2021년, 단위: 건)

구분	사 망 자 수		부 상 자 수	
	(명)	점유율(%)	(명)	점유율(%)
계	23	100	10,978	100
자동차 승차중	6	26.1	6,266	57.1
이륜차 승차중	0	0.0	6	0.1
자전거 승차중	6	26.1	1,137	10.4
보행중	10	43.5	2,529	23.0
기타	1	4.3	1,040	9.5

▶시도별

(기준: 2021년, 단위: 건)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	점유율(%)	(명)	점유율(%)	(명)	점유율(%)
계	8,889	100	23	100	10,978	100
서울	1,026	11.5	2	8.7	1,243	11.3

2) 사이버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관련 통계 참고

○ 이에 따라 국회에는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³⁾ 및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⁴⁾이 제출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지난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제로로 줄인다는 목표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⁵⁾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보도 신설과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영과 어린이 승하차 구역 확대 등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⁶⁾을 수립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23년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초등학교 통학안전 관리 강화 계획’ 등을 통해 스쿨존 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점검⁷⁾을

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634, 제안일 2023.1.26., 제안자 태영호 의원 등 10인)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630, 제안일 2023.1.26., 제안자 태영호 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683, 제안일 2023.1.30., 제안자 강득구 의원 등 35인)

5)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 관계부처 합동, 34~42쪽.

‘정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최초 법정계획으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수립-’,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8.12.) 참조

□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

*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은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안전표지·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활성화하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

6)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 최우선 확보...맞춤형 관리 추진’,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보도자료(2023.2.22.) 참조

7) ‘2023년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점검 확대 계획’, 정책·안전기획관 보도자료(2022.12.12.) 참조

□ 점검 개요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민·관·학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스쿨존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덧붙이거나 처벌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는바, 학생의 교통안전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런점에서 동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통안전교육, 대책마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교통안전지도 및 안전교육과 통학로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 10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는 예산지원의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 점검기간 : 2023. 1. ~ 6. ※ 점검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학교 : 총 605개교

- 변경 전 계획 : 50개교, 변경 후 : 초등학교 전체(605교)

▶ 점검방법 :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 점검 실시

▶ 초등학교 전체 학교 주변 점검 결과 및 개선 요청사항 유관기관에 통보

*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길라잡이」⁸⁾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⁹⁾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구성 및 형식적 측면에서는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조례안 제명에 관한 의견

- 동 조례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의 제명은 조례의 고유한 이름으로서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도 대표성 있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러한 측면에서 동 조례안의 제명은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되었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동 조례안의 규율 내용은 주체가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청 소관의 조례와 달리 조례의 제명이 ‘서울특별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조례의 제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포함해 규정해야 한다는 강제적 법적 근거는 없으나, 조례는 법령과 달리 규율하는 적용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및 소관 범위에 제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적용 범위를 제명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의견 16-0183.).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명을 법제처의 의견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의 구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9)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법제처, 2021.12

3) 책무 규정에 관한 의견(안 제3조)

○ 안 제3조는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에 대한 책무를 각 항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호에 규정된 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3조의 책무규정은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동 조례안의 입법목적은 달성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의미¹⁰⁾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안 제1항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협력단체 간 협의에 따라 시책을 마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력단체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각호에서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본문의 협력단체는 규율 내용의 성격과 의미상 각호에 규정된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협력단체’를 ‘다음 각호의 협력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명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실제 기관 명칭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각호에 정확한 기관명을 명시하는 것이 명확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협력단체’를 ‘각 호의 협력단체’로, 그리고 각호에 규정된 기관의 명칭 중 ‘서울특별시소방본부’를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로 하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20.,2023.2.13.)

10)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99쪽 참조

4) 본칙 규정에 관한 의견(안 제5조~안 제9조)

○ 안 제5조는 교육감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지도, 그리고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 제6조는 교통사고 현황 및 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학교장의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범위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9조는 통학로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각각의 조문 규정은 동 조례안의 내용이 되는 실제 규정으로서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인 학생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기능과 효과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안 제7조제2항에서는 학교 시설 사용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이러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은바, 명확한 법규를 인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통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제3호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에 대하여 ‘스마트폰’을 ‘휴대용 기기’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20.,2023.2.13.)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 훈련 매뉴얼’ 중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요령에 따르면 ‘통학로 도로 횡단 중 스마트폰과 이터폰 등 기기 사용을 금지’ 처럼 스마트폰을 특정해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원안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예산 지원 규정에 관한 의견(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설치·관리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무를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동 규정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서는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제 교육감에게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교육감에게 예산 지원을 규정한 안 제11조는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이준석 2180-8263	입법조사관	정진국 2180-8265
----------	------------------	-------	------------------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 <2015. 1. 20.>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77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